

기공근

기안과	상공과	전화번호	419	공보	0	필요불필요	시 장
진출담당	상공과장	산정국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법조자명	김도원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기안월일	1965. 3. 17	시년월일	65. 3. 20	보존년한	3/19	3/20	3/20
분류기호	1362.33-1771	문서번호		경서기장			
경수참	유신조	각안참조		발신			
제 목	1965년도 대량기 정기 검사 실시						
	1. 65년도 기본운영 계획에 의거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법정 대량난외에 의한 기래 또는 증영에 사용하는 대량기에 개라라						
	2. 대량법 제30조 제3항의 정기검사를 동법 시행세칙 제90조 제1항 및 동제 9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디 다음과 같이 공고 실시코려 합니다.						
	가. 수검지역 및 장소						
	각구 동년외 (별첨공고안과 같음)						
	나. 검사기간						
	(1) 일반분 65년 4월 20일부터 65년 7월 15일까지 (별첨공고안과 같음) (2) 공공기관분 65년 9월 1일부터 65년 10월 31일까지 (별드결재에						
	의기 검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수검장소를 순회 검사함)						

다 수검대상자 조사

계량법 시행세칙 제 82조에 의거 각 구청장은 별기 조사 요령과 같이 계량기 수검자 조사서를 작성한다.

라 용고안

(별지와 같음)

마 검사반 편성 및 용원

검사반 2개반 (A, B)

검사원동원 시 상공과 직원 2명

해당구 선업과 직원 2명

해당응 직원 1명

바. 검사시행사의 재증표 및 용지

(1) 계량기 수검자 조사서 (별첨과 같음) 계량법 시행세칙 제 82조 제 3항 시의 14조

(2) 계량기 수검통지서 (별첨과 같음) 동법 시행세칙 제 82조에 의한 공고통지 용지

(3) 정기검사 재증인. 계량법 시행세칙 제 85조 1항

(4) 합적표 (별첨과 같음). 계량법 시행세칙 제 85조 1항에 따른 부표

(5) 불합적표 (별첨과 같음). 계량법 시행세칙 제 86조 시의 17조

사 수검계량기의 조치



((

(1) 합성기물에 대하여는 계량법 제 32조 1항에 의거 정기검사증인 (五)년도 말미수자) 을 표시하는 동시 식별하기 위하여 합성표(종유, 유적기재) 를 교부한다

(2) 점용계량기로서 합성된 기물에 대하여는 비미러 단위순금만 말도조치한다

(3) 불합성기물에 대하여는 계량법 제 32조 2항에 의거 점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 을 부하는 동시 동법시행세칙 제 16조에 의한 불합성표를 교부한다.

(가) 검사결과 불합성된 기물은 계량법시행령 제 51조 제 2항에 의거 수리가능기물에 한하여 사용점지와 아울러 수리조치한다.

(나) 사용성지된 기물의 수리조치방법 불합성기물의 점정증인을 소인조치하고 수리하도록 지시만하면 그대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법조성이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기물을 임시보관하고 불합성표에 보관표시한후 동표를 제시하는 리가 수리업자에게 인도수리토록 한다.

(다) 수리불가능의 불합성기물에 대하여는 계량법시행령 제 51조 3항에 의거 기물소유자의 임의하에 린장에서 이를 파회조치한다.

(안 1)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 목 동제목

1. 1965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서울특별시공고제 26호로서 실시키로 되었으나 기관하 계량기 사용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불지 조사요령에 의거 수검자 조사에 안전을 기하시기바람

2. 본공고 사항을 각 구 동 제시관에 발취 제시할 것

3. 정기검사의 사실사무를 금년도부터 각 구에서 수행토록하여 관내 수검자의 철저한 조사와 검사 사무에 귀중하는 한편 검사 수탁 방지와 불응자의 조치에 만 ~~안~~ ^{이외 별도} ~~을~~ ^을 ~~가~~ ^가 ~~하는~~ ^{하는} ~~동시~~ ^{동시}

4. 검사 실시에 수반하는 ~~다음~~ ^{다음} ~~사항~~ ^{사항} ~~을~~ ^을 ~~해~~ ^해 ~~당~~ ^당 ~~직~~ ^직 원이 숙지하여 사무착오가 없도록 실시한다.

아 음

(권의 안 2항의 '가 ~ 사' 를 이 기 함)

- 유 권 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부
- 2. 계량기 수검자 조사요령 부
- 3. 계량기 정기검사 수검자 조사서 부
- 4. 계량기 수검통지서 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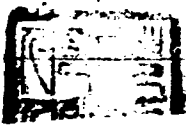
수 신 처 서 칭 1-9

(안 2)

수 신 상 공 ~~부~~ ^관 발 신 시 장

참 조 중 앙 계 량 국 장

제 목 동제목



1965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별첨공고와

발의 실시키로 되었기에 제량법 시행세칙 제 12조 2항에 의거
보고 합니다.

유 럽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 호 부 록

(안 3)

수 신 경찰국장 발 신 산업국장

참 조 보안과장

제 목 등 제 부

1. 1965년도 제량기 정기검사를 벌치 서울특별시공고
제 26 호에 의거 실시키로 되었나

2. 특히 1964. 1. 1 부리는 법정 미터법 제량한 키를 사용
키로 되어 있으므로

3. 각서에 서달하여 공고된 제량기 수검장소와 검사
기간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탈검차가 없도록 적극 등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럽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6 호 부 (각서배부분)

2. 제량기 수검장 조사요령 부 () 록

(안 4)

수 신 공보국장 발 신 산업국장

제 목 신문 및 방송 보도 의뢰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6 호로서 1965년도 제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키로 되었사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포문

가. 계량기 정기검사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미터법 계량단위로 된 계량기로서 명량한 상거래를 하도록

나. 급변 서울특별시 산업국에서는 시내 전반에 걸쳐 증봉 또는 거래에 사용하는 「자, 「뒤, 「말, 「서울」에 대하여 일제 검사를 각구 동별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다. 이는 상거래의 계량정확을 기하여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라. 지정된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법 제 41조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오니 빠짐없이 검사를 받기를 마라며

마. 검사 일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계량기 사용자는 각구 동별 수검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는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사 일 정

구 역	검 사 기 간	구 역	검 사 기 간	구 역	검 사 기 간
종로구	65 4.20 ~ 5.8	성동구	65 5.22 ~ 6.14	야포구	65 5.7 ~ 5.12
중구	65 5.10 ~ 5.26	성북구	65 7.5 ~ 7.15	용산구	65 5.20 ~ 6.2
동대문구	65 6.10 ~ 7.2	서대문구	65 4.20 ~ 5.4	영등포구	65 6.4 ~ 6.26

유 청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부

2. 계량기 수검자 조사요령 부 록

별표 제 16기 수검자조사서 및 수검통지서 배부표					
구분	수검자조사서	수검통지서	계	수령인	비고
총 로 구	50	5,000	5,050		36 동사무소
중 구	45	4,500	4,545		32 "
동대문구	40	4,000	4,040		23 " / 을양소
성 동 구	45	4,500	4,545		29 " 4 "
성 북 구	40	4,000	4,040		24 " 2 "
서 대문구	45	4,500	4,545		31 " 1 "
마 포 구	30	3,000	3,030		19 "
용 산 구	40	4,000	4,040		28 "
영 등포구	50	5,000	5,050		30 " 5 중소
계	385	38,500	38,885		22 동사무소 13 중소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제 26호

1965년도 정기계량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6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시장 훈 치 영

1. 수검대상: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되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2. 검사일시 및 수검구역.

관내	검 사 일 시	수 검 장 소	수 검 구 역 (동사무소관할)
종	4월 20일 ^{자 10.00} ^{시 16.00}	청송동사무소	청송. 자하
	" 21일 "	인왕동	인왕. 누각. 벽송
	" 22일 "	매 동	매동. 서직. 풍교
	" 23일 "	중앙동	중앙. 신문. 광고
	" 24일 "	계 동	벽죽. 계동
	" 26일 "	별궁동	별궁. 수진. 전촌. 대화
	" 27일 "	돈화문동	돈화문. 원서
	" 28일 "	합 동	미와. 대묘. 문현. 합동
	" 29일 "	대 나동	대사. 종각. 남원시장
	" 30일 "	종 각 동	" "
구	5월 1일	동대문남부시장	동대문 남부시장 일원
	" 3일	광장회사	동대문시장 일원
	" 4일	"	"

관비	검 사 일 시	수점 장소	수점구역 (동사무소 관할)
종 로 구	5월 5일 ^{자 10.00} 지 16.00	이련동 사무소	이련 동내. 경계상가 일대
	" 6일 "	종로5가동 "	종로5가. 종로6가.
	" 7일 "	충신동 "	충신. 남산. 대학.
	" 8일 "	명륜2.4가동 "	명륜 2.4. 1.3 가동.
주 구	5월 10일 ^{자 10.00} 지 16.00	도 동 사무소	도동. 동차.
	" 11일 "	혁수동 "	혁수. 청계
	" 12일 "	홍천동 "	홍천동
	" 13일 "	대창동 "	대창동
	" 14일 "	남대문시장조합	남대문시장 일원
	" 15일 "	" "	" "
	" 17일 "	회현 1가동 "	회현 1-1, 회현 1-2, 회현 2, 3, 2회광
	" 18일 "	남무동 "	남산. 남무. 동원
	" 19일 "	중무로 2가동 "	중무 1, 2가. 명동. 명회. 인현 1가
	" 20일 "	낙선동 "	낙선. 중부시장
	" 21일 "	광희 1가동 "	장문 1가. 장문 2가. 삼별. 광희 1, 2가. 아현
	" 22일 "	을지로 4가동 "	을지로 4가동. 산림. 주교
	" 24일 "	을지로 2, 3가동 "	을지로 2, 3가. 혼도.
	" 25일 "	훈연동 "	훈연. 을지로 6, 7가동.
	" 26일 "	충인동 충인동	충인동 충인동 (인현시장 포함)
	동대문구	6월 16일 ^{자 10.00} 지 16.00	창신 2동 사무소
" 17일 "		창신 4동 "	창신 3동. 4동. 205

관내	접사일시	수검장소	수검구분(동사무소별)
동대분구	6월 18일 <small>자 12.00 지 16.00</small>	송인동사무소	송인동
	" 19일 "	선설동 "	선설동
	" 21일 "	보문1동 "	보문1동 2동
	" 22일 "	용두1동 "	용두1동
	" 23일 "	용두2동 "	용두2동
	" 24일 "	재기2동 "	재기2동 3동
	" 25일 "	전농1동 "	전농1동
	" 26일 "	전농2동 "	전농2동 3동
	" 28일 "	답십리1동 "	답십리1동 2동
	" 29일 "	청량리1동 "	청량리1동
	" 30일 "	청량리2동 "	재기1동, 청량리2동
	7월 1일 "	회기동 "	회기, 회정, 리문동
" 2일 "	상봉동 "	면북동, 망우출장소	
동구	5월 28일 <small>자 10.00 지 16.00</small>	성동구청내	율원, 무학, 무학2동
	" 29일 "	경주동사무소	경주, 역수동
	" 31일 "	문화동 "	문화, 동화, 중현동
	6월 1일 "	금북동 "	금북동
	" 2일 "	금남동 "	금남, 옥수동
	" 3일 "	중앙시장조합 "	홍인, 광학, 유학, 중앙시장
	" 4일 "	민창동 "	민창, 현인, 당현동
	" 5일 "	도선동 "	도선, 홍익, 광섬리시장

관내	검 사 일 시	수검 장소	수검 구역 (종사부소관할)
성 동 구	6월 7일 ^{자 10.00} _{지 16.00}	행 양 동 사무소	마장, 사근, 행양, 행양동
	" 8일 "	뚝도출장소	성수1가, 성수2가동
	" 9일 "	장안동	장안, 광의, 신양동
	" 10일 "	천로출장소	천로출장소 관할
	" 11일 "	송파출장소	송파출장소 관할
	" 12일 "	연주출장소	연주출장소 관할
" 14일 "	도선동	소재검사	
성 북 구	7월 5일 ^{자 10.00} _{지 16.00}	동소문동 사무소	성북1, 성북2, 동소문, 삼전1, 삼전2
	" 6일 "	돈암시장조합	동원 남산, 정화, 남암, 서암, 서산
	" 7일 "	"	"
	" 8일 "	정릉제2동	정릉1, 정릉2, 정릉3, 길음1구, 부선동
	" 9일 "	길음시장조합	길음시장 일천
	" 10일 "	"	"
	" 12일 "	월곡시장조합	월곡 동천, 화계, 삼양, 삼양2
	" 13일 "	"	"
	" 14일 "	종암시장조합	종암, 종암 장부
" 15일 "	노래출장소	장동, 도봉동, 노원동, 화계동, 대동동	
서 대 문 구	4월 20일 ^{자 10.00} _{지 16.00}	서대문구청	서정, 순화 합계동
	" 21일 "	만리2동 사무소	중림, 만리1, 만리2동
	" 22일 "	충정로1,2가동	충정로1,2가동, 충정로3가동, 감영
	" 23일 "	석교동	냉천, 석교, 독립문동

관내	검 사 일 시	수 점 장 소	수 점 구 역 (동사무소관할)
사 대 문 구	4월 24일 ^{자10.00} 지10.00	현저2동 사무소	영천, 현저1, 현저2, 현저3동.
	26일	안산1동	안산1, 안산2, 흥은1, 흥은2동
	27일	계점정동	계점정동, 구영동
	28일	북신1동	북신1, 북신2동
	29일	대광1동	대광1, 대광2동
	30일	수석동	수석, 성암, 풍차동
	5월 1일	북아현1동	북아현1, 북아현2, 북아현3
	3일	창천동	대신, 창천, 연혁
	4일	서대문구청	구관하 전역
	마 포 구	5월 7일 ^{자10.00} 지10.00	아현3동 사무소
8일		" "	아현3동일부, 아현2, 5동
10일		아현4동	아현4동, 공덕4동
11일		공덕3동	공덕1, 2, 3동
12일		신공덕1동	신공덕1, 2동
13일		도화2동	도화1, 2동
14일		대흥동	대흥동, 범리동
15일		서강동	서강동, 도교산동, 세교동
17일		관란동	관란동, 신석동
용 산 구	5월 20일 ^{자10.00} 지10.00	후암2동 사무소	후암1, 2동.
	21일	남영동	신동, 길원, 남영동
	22일	청와2동	서계, 청와1, 2, 3동

관내	검사일시	수검장소	수검구역 (동사무소관할)
용	5월 24일 ^{자10.00} _{지14.00}	청화2동 사무소	서계, 청화 1, 2, 3동
	" 25일 "	원호2동	원호로 1, 2가동
	" 26일 "	원신동	원신, 심원동
	" 27일 "	용문동	효창, 도원, 용문, 문계동
산	" 28일 "	" "	" " " "
	" 29일 "	한양로2가2동	한양로1, 한양로2가, 한양로3가, 한양로4가동
	" 31일 "	" "	" "
구	6월 1일	이여원시장	이여원 1, 2동, 용산동
	" 2일 "	보광동	한남, 동빙고 서빙고, 보광동
영 등 포 구	6월 4일 ^{자10.00} _{지10.00}	영등포제2동 사무소	영등포제 1, 2, 3동
	" 5일 "	영등포공설시장조각	영등포제 4동, 영등포공설시장일대
	" 7일 "	" "	" "
	" 8일 "	영등포제 5동	영등포제 5동, 당산 1동
	" 9일 "	당산 4동	당산 4동, 양평 2동
	" 10일 "	당산 3동	당산 3동, 당산 2동
	" 11일 "	문래 1동	문래 1동, 도림 2동
	" 12일 "	문래 2동	문래 2동
	" 14일 "	양평 1동	양평 1동
	" 15일 "	구로 1동	구로 1, 2동, 구로시장일대
	" 16일 "	신길동	신길동, 신왕동, 대방동
	" 17일 "	신남동	신남동, 대림동

관내	검 사 일 시	수 검 장 소	수 검 구 역 (동사무소관내)
	6월 18일 ^{작 10.00} _{리. 6.00}	신 풍 동 사무소	신풍동, 도림1동
	" 19일 "	상 오 1동 "	상오1,2동 상도시장일대
	" 21일 "	본 동 "	본동, 노량진동
	" 22일 "	죽역공인시장조각	죽역1,2,3동 죽역시장일대
	" 23일 "	신동출장소	신동출장소 관내
	" 24일 "	관악출장소	관악출장소 관내
	" 25일 "	오류출장소	오류출장소 관내
	" 26일 "	양서출장소	양서, 양동출장소 관내

3. 계량법 시행세칙 제 14조의 규정에의거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계량기의 구조가 방해하여 운반하기 심히 곤란하거나
 또는 그 수가 많은 경우.
 - 나.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었을
 경우.
 - 다. 계량기가 성질상 운반시 파손되거나 또는 정밀도
 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계량기 수검자 조사요령

1.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하여 시공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계량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계량기 사용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을 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별책(계량기 정기 수검조사서)에 기재 작성한다.
2. 본조사서는 공고 검사일정 및 수검지역(동사무소) 단위로 해당 검사일 3일 전까지 조사 작성하여 구청장 확인후 해당 검사장소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조사서에 의거 동장은 별지 계량기 수검통지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수검기물과 같이 해당 검사일에 제출토록 한다.
4. 수검대상자는 관내의 상점, 시장, 박화점, 공장, 사업장, 병원, 약국 및 약방, 상사 회사 등에서 업무상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단 공공기관은 별도로 검사 실시키로 되었으나 소수의 계량기를 소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가끔적이면 관내 검사 기간 중에 수검토록 하더라도 무방하다.
5. 구청장은 계량법 시행세칙 제 94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가(중요공장) 동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장소 신청서를 받아 관내 해당 검사기간 중에서 지정된 검사일에 수검토록 수리조치 한후 그 결과를 상공과에 보고한다.
6. 본조사서 기재상의 요령

가. 수점자의 성명은 책임자를 기재 할 것

나. 직급은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다. 검사를 받을 제방기의 종류 및 형식 능력 한

(1) 종류는 판수동저울 맞저울, 접시수동저울, 대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비접시수동저울, 줄대, 뒤 받, 실은뜯은자, 글자
뜯은자, 집은자, 등을 기재

(2) 형식능력에는 질량 00kg, 전장 00cm, 전량 00인등을

기재

라. 제량법시행규칙 제 94조에 의한 소저장소 검사 기록도

본 조사서 말미 해당항에 조사 기재 한다.

7. 구청장은 제량법시행규칙 제 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검사에 대체요청하는 검사 신고서의 대하되는 서식제 5호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사실 적부를 조사 확인한후 각 구청장은
검사 기간내 또는 기간이외의 검사기일을 정하여 본인에게 통보
하는등에 검사조치하고 그결과를 상무과에 보고할 것.

8. 구청장은 판내의 해당검사일에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검
통려와 수검접수사무를 할조권 한다. * 붙